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95
------------------	------

발의연월일 : 2012. 9. 20.

발 의 자 : 홍문표 · 노철래 · 김춘진
김우남 · 김태환 · 유성엽
윤명희 · 강석호 · 정문헌
정희수 · 하태경 · 김선동
김윤덕 · 김재원 · 박인숙
최규성 의원(16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동물병원은 수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비영리법인 및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개설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병원은 동물의 보건, 위생 및 각종 질병의 예방·치료를 목적으로 개설되고 그 역할과 기능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영리를 위해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동물병원을 설립할 경우 「의료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동물병원의 무분별한 난립을 예방하고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부대사업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 등을 갖추고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 나. 동물진료법인은 동물진료나 수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위해 동물진료업무 외에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 다. 동물진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변경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설립한 법인”을 “설립된 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장의2(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동물진료법인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등)

-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동물진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동물병원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 ③ 동물진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이 법에 따른 동물진료법인이 아니면 동물진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의3(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 ① 동물진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동물병원에서 동물진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동물진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동물진료나 수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2.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3. 동물진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제2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동물진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동물진료법인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동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의4(「민법」의 준용) 동물진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5(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동물진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동물진료법인이 개설한 동물병원을 폐업하고 2년 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 5.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벌칙) 제22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명칭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제2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재산을 출연하여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의 규정에 부합하는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동물병원은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으로 본다. 다만, 이 기간 내에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동물병원에 대한 개설신고를 취소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개설) ① (생략)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1. 2. (생략)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u>설립한 법인</u> 4. 5. (생략) ③ · ④ (생략)	제17조(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1. 2. (현행과 같음) 3. _____ <u>설립된 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u> 4. 5.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장의2 동물진료법인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등)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동물진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동물병원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동물진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동물진료법인이 아니면 동물진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신 설>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22조의3(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① 동물진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동물병원에서 동물진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동물진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진료나 수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2.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3. 동물진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p>② 제1항제2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동물진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동물진료법인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동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신설〉</p>	<p>제22조의4(「민법」의 준용) 동물진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신설〉</p>	<p>제22조의5(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동물진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동물진료법인이 개설한 동물병원을 폐업하고 2년 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p>〈신설〉</p>	<p>제39조의2(벌칙) 제22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명칭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41조(과태료)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제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p>
<p>1. ~ 6의2 (생략)</p>	<p>1.~6의2. (현행과 같음)</p>
<p>〈신설〉</p>	<p>6의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7. ~ 9. (생략)</p>	<p>7. ~ 9. (현행과 같음)</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